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·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776
------	------

2024.04.30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3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4.04.30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정책실장 이해우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서울 경제상황 진단 방법을 현실화하고,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조기경보지수”를 삭제하고 “정량·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” 강화
-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
- “경제위기대책본부”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 세분화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‘조기경보지수’를 삭제하고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며 경제위기 단계별로 체계적 대응을 수행하는 ‘경제위기대책본부’의 신설을 통해 동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경위

- 서울시는 동 조례 제정 전부터 자체적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수집·분석하고, 서울연구원에서 개발한 소비경기지수·종합경기지수 등을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해 왔음¹⁾.
- 그러나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

1)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: 서울시의 소비경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를 개발하고, 창업, 고용동향 등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용역이며 2021년부터 서울연구원 자체연구과제로 전환 운영함.

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업의 매출 감소, 가계부채 및 실업률 증가 등 서울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됨.

-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서울시는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서울경제 위기 진단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」를 제정함.
- 그리고 동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위기진단지표를 개발(2021년)하고 지역경기 및 금융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음(2022.3월~현재).

<서울특별시 위기진단 지표>

2022.3월~현재

연번	부문	지표
1	지역경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서울소비경기지수(소매, 음식 등 소비중심업종 매출액)- 생활밀접업종(26개 자영업 경기지수, 매출액 증감)- 상권동향(개업, 폐업률, 임대시세 등)
2	금융위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가계(대출잔액, 대출자 및 연체자수 등)- 소상공인(매출액, 대출잔액, 업체수)- 중소기업(대출잔액, 장기연체기업 수 등)

- 또한 서울시는 경기, 기업, 소비, 물가, 노동시장, 민간신용, 부동산 시장 등 7개 부문에 대한 경제동향을 파악하여 서울경제동향을 발간(2023.8월~현재)하고, 연 2회(상·하반기)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정성조사 방식으로 서울경제 위기 정도를 진단하고 있는 상황임.

<서울특별시 경제동향 지표>

2023.8월~현재

연번	부문	주요지표	
1	경기	- 경기동행·선행지수 순환변동치 - 수출·수입액	- 제조업, 서비스업 생산지수 - 해외여행객 출입·국 현황
2	기업	- 기업수, 창업기업수 -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지수	- 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
3	소비	-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	- 서울소비경기지수(서울연구원)
4	물가	-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	- 월별 소비자물가
5	노동시장	- 취업자수 -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	- 경제활동참가율 - 고용률, 실업률
6	민간신용	- 예금은행 지역별 가계대출 - DSR 70%이상 개인 비율	- 예금은행 지역별 연체율 - 소상공인 대출잔액 등
7	부동산시장	- 매매/전세/월세가격지수 - 아파트 준공·분양 실적	- 주택매매거래현황 - 전월세 임대거래량

다. 개정안의 검토

- 현행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은 ‘조기 경보지수를 포함한 조기경보시스템’을 구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개발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-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경우에도 경제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경제위기 유형 다양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변수 출현으로 정형적 상설위원회를 통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관련 조항²⁾은 사문화된 상황임.

2) 제5조(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, 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, 제8조(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),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,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, 제12조(실무지원단)
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현행 조례의 현실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‘조기경보지수’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(안 제2조제3호 · 제4호, 제5조제1항제1호),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<u>조기경보지수</u>”란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 분석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.</p> <p>4. “<u>모니터링</u>”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 ·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 · 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· 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.</p> <p>1. <u>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</u></p> <p>2. ~ 5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3조 · 제14조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-----이란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·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1. ~ 4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3조(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)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,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.</u></p> <p>제14조 · 제15조 (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)</p>

-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상설위원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제상황점검 위원회의 규모를 기존의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(안 제9조제1항)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행정1부시장과 경제정책실장으로 하향 조정하면서(안 제9조제2항) 비상설화(안 제8조·제11조제2항)하여 실무차원의 탄력적인 소집과 해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3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.</p> <p>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<u>임명하거나</u> 위촉한다. <u>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④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· ⑥ (생 략)</p> <p>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<u>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,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둘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20명</u> -- ----- <u>하되,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</u>.</p> <p>② <u>위원회는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<u>임명 또는</u> -----. <후단 삭제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④ · ⑤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거나</u> ----- --- <u>경우에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</u>.</p>

<p>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<u>7일</u>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⑤ (생 략)</p> <p>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15일</u>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<u>담당사무관이 맡는다.</u></p>
---	--

-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니터링과 위기분석,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현실성 미흡에 따른 실효성 상실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<서울특별시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방안(예시)>

단계	상황예시	대응체계
정상	- 지표상 이상징후가 일시적인 경우	- 상황판단회의(서울연구원, 경제정책과)
주의	- 지표상 이상징후 3개월 지속 시 - 상황판단회의의 '주의' 단계 판단	- 경제상황점검위원회(비상설) 운영
위기	- 지표상 이상징후 전방위 확대 시 - 위원회의 '위기' 단계 판단	- 경제위기대책본부 가동(시장 주체)

- 다만 위기 진단 및 경제 동향 모니터링은 전문가와 대응체계 가동의 시작점이 되므로 끊임없는 지표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,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구체적 위기단계 판단기준 및 대응체계를

조속히 마련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서울 경제상황 진단 방법을 현실화하고, 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조기경보지수”를 삭제하고 “정량·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” 강화
- 나.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
- 다. “경제위기대책본부”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 세분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(조례안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, 각 호에 대응하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)
- (일부수용) 제5조제1항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전반에 관한 포괄적 조항으로 구체적 특성을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, 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에 반영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2. 15. ~ 3. 6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김혜선 (☎ 2133-5220)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”를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작성·배포”를 “성별, 연령 등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·배포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30명”을 “20명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하되,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임명하거나”를 “임명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,”를 “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”로, “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”를 “경우에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7일”을 “15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제6항 중 “담당 과장이 된다”를 “담당사무관이 맡는다”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)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,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<u>3. “조기경보지수”란 경제위기</u> <u>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</u> <u>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</u> <u>종합·분석하여 산출한 지수</u> <u>를 말한다.</u></p> <p>4. “모니터링”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·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·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-----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
<p>제5조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.</p> <p>1.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 경보시스템</p> <p>2. ~ 5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5조(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1. ~ 4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 ① 시장은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</p>	<p>제6조(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·운영) ① ----- -----</p>

계별 대응조치 및 관계 기관과
의 협력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
응매뉴얼(이하 “대응매뉴얼”이
라 한다)을 작성·배포하여야
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8조(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(생 략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

----- 성별, 연령 등 시민
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
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
작성 · 배포 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
----- 20명 -----
--- 하되, 위촉위원의 경우 성
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맡고,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.

③ _____
_____ 임명 또
는 _____ <후단 삭제>

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씩 개최하되,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·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⑤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④ · ⑤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거나 ----- 경우에 소집하고,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15일 ----- -----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<신 설>

⑥ -----

----- 담당사무관이 맡는다.

제13조(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)

① 위원회에서 이상정후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,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.

제13조 · 제14조 (생략)

제14조 · 제15조 (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“조기경보시스템 삭제”, “경제상황점검위원회 비상설화” 등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사안이기에 부수 비용이 미발생

4. 작성자

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김혜선(02-2133-5220)